

# 심판위원회 운영규정

2015. 02. 07. 제정  
2015. 11. 28. 개정  
2016. 09. 27. 개정  
2020. 10. 8. 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설치근거 및 명칭)** 심판위원회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을 심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 <개정'20. 10. 8>

**제2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(적용범위)** 위원회는 협회 등록심판으로 제6조 제2항의 자격자에 적용한다.  
<개정'20. 10. 8>

**제4조 (제정의무)** ① 협회는 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 후 대한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)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② 이 규정과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
**제5조 (기능)** 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
2. 심판의 권익 보호·증진에 관한 사항
3. 심판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
4. 협회장 선거인단 추천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

##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

**제6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2인 이내 <개정'20. 10. 8>
3.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 <개정'20. 10. 8>

② 제1항의 위원은 정기 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. <개정

'20. 10. 8>

1. 협회 등록심판으로서, 최근 3년 내 협회가 주최·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총 4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<<개정'20. 10. 8>
- ③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<개정'20. 10. 8>
-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협회 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<개정'20. 10. 8>
- 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7조(위원 선임)** ① 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에 등록된 심판의 직선제로 선출한다.<개정'20. 10. 8>

- ② 위원은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구성한 후 사무국에 보고한다.<개정'20. 10. 8>
-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④ 부위원장을 2인 선임할 경우 순서를 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.<개정'20. 10. 8>
- ⑤ 위원장 선거에 관한 투표인단의 구성방법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8조(협회 선거인 선출)**<개정'20. 10. 8>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선출하고 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.

1. 위원회 위원장
  2. 위원 중 선거인으로 선출된 자 1명
- ② 제1항의 선거인은 협회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, 만약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.

**제9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10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협회 정관 제23조(회장의 선출) 제2항 및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(선거인) 제1항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시작 전이라도 이 규정 제8조(협회선거인 선출) 제2항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가 된다.<개정'20. 10. 8>
-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11조(위원의 해촉)** ① 협회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<개정'20. 10. 8>

1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4.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<개정'20. 10. 8>
  5.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심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-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해촉 된다.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  2. 협회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<개정'20. 10. 8>
  3. 제6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이후 해당될 경우<개정'20. 10. 8>

**제12조 (회의소집)** 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.

**제13조 (의결정족수)**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4조 (수당 등의 지급)**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 (제척 및 회피)**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 
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.

## 제3장 심판 양성 교육

**제16조 (교육실시)** ① 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·운영하며, 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해야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, 보수교육, 강습회,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,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, 경기규칙, 판정의 이론, 실기 교육 등 당해 협회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심판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판의 도덕성 함양과 관련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배정하여야 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③ 협회는 교육종료 후 반드시 이수증(수료증)을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관리, 운영해야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④~⑦ "삭제" <삭제'20. 10. 8>

## 제4장 심판평가제

**제17조 (심판평가)** ①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② 협회는 상임심판, 협회에 등록하여 당해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회는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③ 협회는 협회 실정에 맞게 평가지표 등 시행세칙을 정하여야 한다.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,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. <개정'20. 10. 8>

## 제5장 심판배정

**제18조(심판기피 및 제척)** ① 협회는 대회 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,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'20. 10. 8>

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, 지도자의 친인척,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9조(심판배정)** ① 협회는 협회 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(팀)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.

1. ~3. "삭제" <삭제'20. 10. 8>

**제20조(심판관정)** ①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.

②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, 당해 협회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③ 협회는 전국규모대회(국내종합대회 포함) 요강에 비디오 재 판독 요청시 판독 및 비도오의 영상을 최소 1개월 이상 보관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. <신설'20. 10. 8>

④ 관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<개정'20. 10. 8>

**제21조(심판의 품위)** ① 심판은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② 심판은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④ 심판은 협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협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법제상벌규정에 따라 징계(문책) 받을 수 있다.

⑥ 심판은 선수·지도자의 팀(단체 등) 입단,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,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## 제6장 상 벌

**제22조(심판의 상벌)**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 법제·상벌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,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.

③ 위 제1항에 의거 협회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장애인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'20. 10. 8>

④ 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심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 
<개정'20. 10. 8>

**제23조 (심판의 포상)** ①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'20. 10. 8>

② 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장애인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24조 (심판자격 상실 및 복권)** <삭제> <삭제'20. 10. 8>

## 제7장 심판 매뉴얼

**제24조 (심판매뉴얼)** 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'20. 10. 8>

### 부 칙 ('15. 2. 7)

**제1조 (시행일)** 본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'15. 11. 28)

**제1조 (시행일)** 본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201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'16. 9. 27.)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 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2020. 10. 8.)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경과조치)** 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운영규정을 즉시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하며, 제  
· 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체육회 동 규정을 적용한다.